

의안번호	2213175
의 퇴 인	임이자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5.
추 계 번호	25F526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자동차부품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신설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4조의36 (자동차 부품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)	○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신설 － 공제대상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－ 공제율: 기업규모별로 제품 생산비용의 10~15% ※ 중소기업: 15%, 중견기업 12%, 대기업 10% － 적용기한: 2030.12.31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4조의36 (자동차 부품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부품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4조의36 신설)

- 개정안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생산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
 - － 공제대상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
 - － 공제내용: 기업규모별로 제품 생산비용의 10~15%
※ 중소기업: 15%, 중견기업 12%, 대기업 10%%
 - － 공제한도: 해당연도 기업의 법인세·소득세의 10%

- 적용기한: 2030.12.31.

※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의 미공제금액이 발생하는 경우, 10년간 이월공제 허용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의 법인세액 및 생산비용 규모 등을 추정해야 하나, 공제대상인 부품의 종류 등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○ 자동차 부품 중 공제가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, 생산비용의 산정방식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공제대상을 특정할 수 없음

- 한국자동차연구원의 「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」에 따르면, 자동차 부품산업은 산업 분류(소분류) 기준 84개 업종에 분포하고 있으나, 공제가 적용되는 부품에 대한 시행령 규정이 미비하여 현 시점에서 공제대상을 특정할 수 없음

○ 또한, 제도 신설시 공제액을 추계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차 부품의 생산하는 개별기업의 부품 생산비용, 법인세액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향후 세액 공제를 추정할 수 없음

- 참고로, 2023년 기준 자동차 부품산업의 생산부품군별 매출 및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음
[표 1] 자동차 부품군별 생산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: 2023년 기준

(단위: 억원)

구분		매출	영업이익
내연차 전용 부품군	엔진 주요 부품	60,814	3,089
	엔진 관련 부품	134,627	6,265
	내연차용 전기장치	7,882	420
	변속기 및 관련 부품	47,150	2,982
내연차-미래차 공용군	동력 전달 부품	156,822	5,485
	차체 및 의장(시트제외)	231,903	11,610
	전기전자 장치	166,885	7,526
	조향/현가장치	69,561	3,141
	제동장치	69,606	1,369
	의자 및 관련부품	70,207	3,062
	안전부품	16,889	1,103
	공조부품	80,069	3,917
	기타	152,336	10,327
미래차 전용 부품군	전기차 주요 부품	145,967	2,068
	수소전기차 전용 부품	357	-79
	자율주행차 전용 부품	11,656	-48
합계		1,422,732	62,238

자료: 한국자동차연구원, 「2024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」, 2025.2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